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단53028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유태훈

피고B

변론 종결 2024. 9. 27.

판결 선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은 161,678,1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678,1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31.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85099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8. 24. 위 법원에서 'C는 원고에게 10,049,31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1. 8. 30.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21. 9. 14.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2022. 10. 5. 기준 12,520,013원이다.

나. C는 주식회사 E와 F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분할납부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8. 5. 28.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을 178,2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6. 25.부터 2021. 5. 25.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E는 위 보증보험약정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2020. 2. 7.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3. 13.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1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2022. 10. 5. 기준 146,712,758원이다.

다. C는 D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 주식회사는 위 보증보험약정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2020. 2. 24.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3. 31.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9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2022. 10. 5. 기준 2,445,330원이다.

라.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2. 10. 5. 기준 총 161,678,101원(=12,520,013원 + 146,712,758원 + 2,445,330원)이다.

마.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6. 2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19. 7. 1. 접수 제23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62,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1,756,301,461원)과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200,0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20. 6. 5.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합계는 2,734,376,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3. 13. 및 2020. 3. 31.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위 사해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인 2020. 3. 13. 및 같은 달 31.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C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나 C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가 2018년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 범위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액배상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시보다 증가했으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증가한 전액을 공제하고,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시보다 감소했으면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그리고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

3)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958,798,04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2,958,798,040원에서 말소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과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56,301,461원의 합계인 1,956,301,461원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1,002,496,579원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2. 10. 5. 기준 161,678,101원으로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도 같은 액수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161,678,1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61,678,1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61,678,1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서윤

별지